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5
------	-----

제출년월일: 2005. 05. 1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함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안 제4조)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1,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안 제14조)
-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15조의1, 제15조의3)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한다(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관련공문 : 세정과-811(2005.01.28)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5-89호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동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7조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신고된”을 “신고하는”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의하여 등록된”을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9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각각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 선정된 자와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저당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1,000분의 3을”을 “1,000분의 1.5를”로 한다.

제15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제23호 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

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조제1항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8조중 “지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지방세법”을“「지방세법」”으로 하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20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2조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본문 및 각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4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동항각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 및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14조의2”를 “제114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조 제목중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으로 하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조 및 제3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동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13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①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한다.</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u>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u>주민등록법</u>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①----- ----- ----- ----- -----<u>재산세</u>----- ----- ----- ----- -----<u>재산세</u>----- ----- ----- -----</p> <p>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주민등록법」----- ----- ----- ----- ----- ----- ----- ----- ----- ----- -----</p>

현 행	개 정
<p>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u>자동차관리법</u>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 ~ 4. (생략)</p> <p>③ (생략)</p> <p>1. <u>자동차관리법</u>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생략)</p> <p>3. <u>자동차관리법</u>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p> <p>-----</p> <p>-----</p> <p>-----</p> <p>-----</p> <p>-----</p> <p>1. -----</p> <p>-----</p> <p>----- <u>「자동차관리법」</u> -----</p> <p>-----</p> <p>-----</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u>「자동차관리법」</u> -----</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3. <u>「자동차관리법」</u> -----</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u>주거용부동산</u>(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p>	<p>제4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p> <p>-----</p> <p>-----</p> <p>----- <u>주택</u> -----</p> <p>-----</p> <p>----- <u>재산세</u> -----</p>

현 행	개 정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p>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u>민법</u>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u>「민법」</u>----- ----- ----- -----<u>재산세</u> ----- -----.</p>
<p>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법</u>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법」</u> ----- ----- ----- -----<u>재산세</u> ----- -----.</p>
<p>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생교육법에</u>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u>한국노동교육원법에</u>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 4. (생략) 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u> 제16조의 규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u>재산세</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생교육법」</u>-----<u>신고</u>하는----- 2. <u>「한국노동교육원법」</u>----- 3. ~ 4. (현행과 같음) 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u>

현 행	개 정
<p>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p> <p>6. <u>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u></p> <p>7. <u>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u></p>	<p>-----<u>의한</u>-----</p> <p>6. 「<u>도서관 및 독서진흥법</u>」에 의한 도서관</p> <p>7. 「<u>과학관육성법</u>」에 의한 과학관</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u>를 면제한다.</p> <p>1. <u>문화재보호법</u>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u>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u>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u></p> <p>3. <u>문화재보호법</u> 및 <u>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u>에 의하여 지정된 <u>보호구역안의 부동산</u></p> <p>②<u>문화재보호법</u>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p> <p>-----<u>재산세</u>-----</p> <p>-----.</p> <p>1. 「<u>문화재보호법</u>」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u>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u>」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u>건축물 및 주택으로서</u>-----</p> <p>-----</p> <p>3. 「<u>문화재보호법</u>」 및 「<u>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u>」에 의하여 지정된 <u>보호구역안의 부동산</u></p> <p>②「<u>문화재보호법</u>」-----</p> <p>-----</p> <p>-----<u>재산세</u>-----</p> <p>-----.</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u>주거용건축물 및 그</u></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①-----</p> <p>-----</p> <p>-----</p> <p>-----</p> <p>-----</p> <p>-----</p> <p>-----</p> <p>-----</p> <p>-----<u>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u></p>

현 행	개 정
<p>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p> <p>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p> <p>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p> <p>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p> <p>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p>

현 행	개 정
<p>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234조의16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p>	<p>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②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p>

현 행	개 정
	<p>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 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 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p>

현 행	개 정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p>	<p><u>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u>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u>」----- 「<u>농수산물가공 산업 육성법</u>」----- 「<u>수산물품질관리법</u>」-----</p> <p>-----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② 「<u>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u>지방세법시행규칙</u>」-----</p>

현 행	개 정
<p>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한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p>	<p>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p>

현 행	개 정
<p>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p>----- ----- ----- 「지방세법」 ----- ----- ----- 1,000분의 1.5를 ----- -----</p>
<p>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재산세 ----- -----</p>
<p>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p>	<p>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p>

현 행	개 정
<p>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계산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p>	<p>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5조의3(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의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p>

현 행	개 정
	<p>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 가액 중 높은가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p>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 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u>철도법</u>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 7호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u>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 를 면제한다. 다만, <u>지방세법</u> 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u>「철도법」</u>----- ----- -----<u>재산세</u>-----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u>재산세</u>----- ----- -----<u>「지방세법」</u>----- ----- -----</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 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u>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 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 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경감한다.</p> <p>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 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 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 ----- -----<u>재산세</u>----- ----- ----- 1.----- ----- ----- -----<u>재산세</u>----- ----- -----</p>

현 행	개 정
<p>2. (생략)</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p>	<p>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 ----- ----- ----- ----- ----- 「지방세법」----- ----- 재산세----- ----- ----- -----</p> <p>제19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 ----- 「지방세법」-----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

현 행	개 정
<p>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 「지방세법」 ----- ----- ----- <u>재산세</u> ----- ----- -----</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u>화물유통촉진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u>화물유통촉진법</u>」 ----- ----- ----- ----- <u>재산세</u> ----- -----</p>
<p>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u>전쟁기념사업회법</u>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u>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u>전쟁기념사업회법</u>」 ----- ----- ----- ----- <u>재산세</u> ----- ----- -----</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u>조세특례제한법</u>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u>조세특례제한법</u>」 ----- ----- -----</p>

현 행	개 정
<p>세를 추징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p>	<p>-----.</p> <p>1. 「조세특례제한법」 ----- ----- ----- <u>재산세</u> ----- ----- ----- ----- ----- ----- ----- ----- ----- ----- ----- ----- ----- ----- ----- -----</p> <p>2. 「조세특례제한법」 ----- ----- ----- <u>재산세</u> ----- ----- ----- ----- ----- ----- ----- ----- ----- ----- ----- ----- ----- ----- -----</p> <p>3. 「조세특례제한법」 -----</p>

현 행	개 정
<p>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 -----<u>재산세</u>----- ----- ----- ----- -----</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4. ----- ----- -----<u>재산세</u>----- ----- ----- ----- -----</p>
<p>제24조(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u>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31일 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24조(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u>」 ----- ----- ----- ----- ----- -----<u>재산세</u>----- ----- -----</p>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u>수도권정비계획법</u>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p>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감면) ①「<u>수도권정비계획법</u>」----- ----- ----- -----</p>

현 행	개 정
<p>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정한다.</p> <p>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p>	<p>----- -----</p>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세</p> <p>----- -----</p> <p>1. ----- ----- ----- -----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세</p> <p>2. ----- ----- ----- ----- ----- ----- ----- ----- ----- ----- ----- ----- ----- ----- -----</p> <p>② ----- ----- ----- -----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세법 시행규</p>

현 행	개 정
<p>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칙, 제114조의3-----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 ----- 재산세 ----- -----.</p>
<p>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재산세 ----- -----.</p>
<p>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 ----- -----.</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p>

현 행	개 정
<p>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 토지에 대한 재산세----- ----- -----</p>
<p>제33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	<p>제3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